평택화양|동문디이스트 | 생애최초 특별공급



구분	내용								
대상자	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및 기타지역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※ (예외) 2024,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. ■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■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 ■ 아래 '기' 또는 '나'에 해당하는 분 기·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(태아, 입양자녀 포함,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)가 있는 분나. 1인 가구(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) -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, '단독세대'와 '단독세대가 아닌 분'으로 구분됨 - '단독세대'란, 단독세대주이거나,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,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㎡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- '단독세대가 아닌 분'이란,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■ 「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」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*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- 과거 1년 내에 소득세(「소득세법」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)를 납부한 분을 포함 -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, 세액공제, 세액공제,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								
당첨자 선정방법	■ 당첨자 선정 순서 : ①소득구분 → ②지역 → ③추첨 ■ ①소득구분(신설)								
	단계	소득구분	내용						
	1단계	신생아 우선공급(15%)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)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,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% 이하인 분						
	2단계	신생아 일반공급(5%)	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(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)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,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% 초과 160% 이하인 분						
	3단계	우선공급(35%)	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% 이하인 분						
	4단계	일반공급(15%)	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% 초과 160% 이하인 분						
	5단계	추첨공급	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		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과하나, 부동산가액 3억 3,100만원 이하인 분				
			1인 가구		는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하이거나, 부동산가액 3억 3,100만원 이하인 분				
	※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,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,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								
	■②지역: 해당지역 거주자(평택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) → 기타지역 거주자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 및 기타지역 거주 ■ 자녀기준								
	- (임신·입양)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,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,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*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, 유산·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*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*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■소득기준								
	- 소득 확인 시점	미어지미 표기과 나는 사는 취이 되면							
	O _E	 주자모집공고일 24.04.25	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(해당 세대의) 전년도 소득		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(해당 세대의) 전전년도 소득				
	- 2002년도 도시그리자 가그의스병 가그다워펴고 스트 기즈								

비고

-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

소득구분		비율	소득금액						
			3인 이하	4인	5인	6인	7인	8인	
신생아우선공급, 우선공급		130% 이하	~9,105,862원	~10,723,007원	~11,407,592원	~12,432,267원	~13,456,941원	~14,481,615원	
신생아일반공급, 일반공급		130% 초과 160% 이하	9,105,863원~ 11,207,214원	10,723,008원~ 13,197,547원	11,407,593원~ 14,040,114원	12,432,268원 ~15,301,251원	13,456,942원~ 16,562,389원	14,481,616원~ 17,823,526원	
추첨공급	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	16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충족	11,207,215원~	13,197,548원~	14,040,115원~	15,301,252원~	16,562,390원~	17,823,527원~	
	1인 가구	160% 이하	~11,207,214원	~13,197,547원	~14,040,114원	~15,301,251원	~16,562,389원	~17,823,526원	
		160%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 충족	11,207,215원~	13,197,548원~	14,040,115원~	15,301,252원~	16,562,390원~	17,823,527원~	